

2025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6.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500억 원(일반 중소기업 400억원, 조선업종 100억원)

※ 은행협조 용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구분	자금용도	세부내용
경영안정 자금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붙임 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한 불가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참고 1, p.6~p.12】**

-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 제조업의 경우 **【참고 1-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 지원 제외대상 **【참고 2, p.13】**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육성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신청일 현재 시 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업체
-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4. 용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지원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0%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용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용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용자 신청업체	1.5%	1.5%	1.2%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5. 6. 23.(월) ~ 6. 27.(금)
- 신청방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누리집(<http://www.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최근 연도 3개월, 직전 연도 3개월)
<예시 : 2025년 3~5월 발급 시 2024년 3~5월 분도 함께 제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3】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직수출실적 기준, 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처리절차 : 은행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용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용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용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용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2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지원승인일(용자추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용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 - 7221

[참고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지식서비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60 방송업
- 612 전기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3 광고업
-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7521 여행사업
-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술혁신 및 안전인프라기업

-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아래 해당기업

(단, 1인 창조기업 또는 안전인프라기업의 경우 업력제한 없음)

분 야	해 당 기 업	세 부 내 용
신기술 제조업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조사시 신기술사업자로 확인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기업 ○ 연구성과를 기업화 또는 제품화하는 기업 ○ 기술협약에 의거 제품 및 공정개발하는 기업 ○ 기타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녹색성장 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 창업	지식문화산업(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산업발전법 제5조를 기초로 선정> ○ (지식기반 서비스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일반콘텐츠산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 45세이하인 기업	○ 신기술사업자
40·50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40 ~ 만 55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일반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다만, 상시근로자 없이 4인 이하가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신기술 사업자
첨단·뿌리산업 창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지식경제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 (뿌리산업) 중소기업청 선정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영위기업
안전인프라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조사시 안전인프라 보증 대상기업으로 확인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취약기업)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우수기업)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관련 인증받은 기업)

안전취약기업 지원대상 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
고무제품 제조업	2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
식료품 제조업	10
섬유제품 제조업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대상

사 업 명	판단기준	유효기간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3년
②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익년도 1년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적합판정	익년도 2년
④ 위험성평가 사업	인정	3년
⑤ 안전 신기술 육성 플랫폼 운영(안전 신기술 공모전)	공모전 수상	3년
⑥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선발	3년
⑦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참여(미흡 제외)	익년도 1년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 '신성장 공동기준'의 9개 테마의 *품목(기술)인 경우
- 항목 1~3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각 항목별 1개 이상의 판별요건 충족)

항목	판 별 요 건	판 단 기 준	
		분 야	품 목*
1	신성장산업 테마		
	①첨단제조·자동화		
	②화학·신소재		
	③에너지		
	④환경·지속가능		
	⑤건강·진단		
	⑥정보통신		
	⑦전기·전자		
	⑧센서·측정		
	⑨문화·콘텐츠		
2	①초연결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등의 네트워크 연결 여부	
	②초지능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연관 여부	
	③융합성	기존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 여부	
3	①신사업창출	기존에 없던 사업의 창출 및 서비스 구현 여부	
	②신시장창출	기존에 기대하기 어려운 신규시장에 진입 또는 기존에 없던 시장 창출 여부	
	③시너지창출	2개 이상 개별 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 창출 여부	

경영혁신형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유망창업기업 및 기술·지식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분 야		해 당 기 업
유 망 창 업 기 업	전문자격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자격증과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대학 교수* 또는 박사이거나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일로부터 과거 3년 내에 제조업 또는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이디어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기술로 창업(예정)한 기업이거나,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나 기업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하거나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예정) 하는 기업 ■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기업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장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장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장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 아래 분야 해당기업으로 센터 확인증 소지기업

- 조선해양플랜트(에코십, 스마트십)
- 지역특화 3D프린팅 산업
- 첨단의료자동화산업
- 안전산업

【참고 1-1】

제조업

-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다.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
- 라.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장 등록을 전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
- 마.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참고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용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추천업체 평가항목

1. 평 점 (100점)

① 매출액 : 매출액이 영세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매출액 (20점)	제조업	10억 미만	20점
		20억 미만	16점
		50억 미만	12점
		100억 미만	8점
		100억 이상	4점
	비제조업	5억 미만	20점
		10억 미만	16점
		30억 미만	12점
		50억 미만	8점
		50억 이상	4점

② 업 력 : 업력이 오래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업 력 (10점)	15년 이상	10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8점	
	5년 이상	6점	
	3년 이상	4점	
	3년 미만	2점	

③ 자금사용 횟수 : 자금수혜 신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2002. 7. 1이후 경영안정(육성)자금 수혜 횟수 (10점)	0(신규)~2회	10점	
	3~5회	5점	
	6회이상 수혜 또는 최근3년 이내 1회이상 실패	-5점	

④ 경쟁력 및 기술성 : 기술개발 및 기술관련 인프라 보유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경쟁력 및 기술성 (10점)	특허권(국내/해외),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	10점	인증기간 내 증서
	벤처, 뿌리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8점	인증기간 내 증서
	실용신안, 기업부설연구소	6점	증서 또는 확인증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4점	인증서 또는 확인증 제출

※ 항목별 최우선 항목만 적용(항목별 중복합산 점수 산정 불가)

⑤ 재무 건전성 :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부채비율 (10점)	평균부채비율 이하	10점	※ 제조업 용자제한 부채비율표 (중기부소관 정책자금지원 적용기준 준용) ※ 신규기업은 최하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이하	7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초과	5점	

⑥ 매출액 증가율 : 기업 성장성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점) (당기증가율-전기 증가율)/전기증가 율×100	매출액 증가율 50% 이상	20점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신규기업은 최하점)
	매출액 증가율 30%~50% 미만	16점	
	매출액 증가율 20%~30% 미만	12점	
	매출액 증가율 10%~20% 미만	8점	
	매출액 증가율 10% 미만	4점	

⑦ 고용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인원 기준

항 목		점수	비 고	
인력증감율 (20점) (최근년도3개월평균인원 -전년동기3개월평균인원)/전년동기3개월평균인 원×100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확인] 기준 전년대비 신규고용 증가율	30%이상	20점	※ [최근 2개년도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 서 확인] 제출 ※ 신규기업은 최하점
		10%이상~30%미만	16점	
		5%이상~10%미만	12점	
		1%초과~5%미만	8점	
		1%이하(유지/감소)	4점	

2. 가 점 (최대 10점)

① 수 상

항 목	점수	비 고
대통령상	4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 및 대표자명의로 한함)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3점	
기초자치단체장상	2점	

② 우 대

항 목	점수	비 고
가족친화기업	3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확인
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		본사가 보육입주 기관 내 소재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인증서
타 시·도 전입기업		법인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모범장수기업		모범장수기업 인증서(울산시)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사업재편 승인증서(산업부)
청년기업		청년기업인증서 또는 대표자주민등록증

※ 청년기업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공동대표 허용

③ 사회공헌도

항 목	점수	비 고
메세나 운동 참여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	3점	매출액의 0.2 % 초과
	2점	매출액의 0.2 % 이하
	1점	매출액의 0.1 % 이하

[참고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아래 화면은 예시화면으로 본 접수시 화면구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단계 > 1단계 용자정보 2단계 신청정보

신청종인 공고명 :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

용자조건 및 한도

• 지원대상을 선택하여 용자조건 및 한도를 확인하세요

지원구분 : 운영자금

용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용자비율(용도) : 직전년도 매출액의 25% 이하

지원(용자)한도 : 500,000,000 (기업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구입, 인건비, 세급과공과, 제품생산, 시장 개척 등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신청정보

담당자명 :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 010 - 1234 - 5678

직책 : 차장

담당자이메일 : test@ulsan.co.kr

우대기업확인 : 선택중이요

상사고용인원 : 10 명 ※최근 원청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근무소속 신고 인원

매출액 : 2,500,000,000 원 ※최근 재무제표 매출액 기입

자금용도 : 신규 기존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차별 기타

지원 신청액

운영자금	
용자한도액	500,000,000 원
신청금액	<input type="text" value="500,000,000"/> 원

은행정보

취급은행 : 경남은행

취급은행 지점명 : 울산

대출취급금액 : 500,000,000 원

담보 제공방법 : 부동산

상당일자 : 2025-05-28

은행담당자명 : 이경남

은행 연락처 : 052 - 123 - 4567

직책 : 입장

신청중인 공고명 : 2024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체 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436-88-02262		
사업체명	위드시스템테스트		
대표자명	테스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value="931015"/>		
설립일자	2025-05-21		
법인번호	<input type="text" value="111111"/>	-	<input type="text" value="2222222"/>
과세유형	<input type="text" value="일반과세자"/>		
휴대전화	<input type="text" value="010"/>	-	<input type="text" value="1234"/> - <input type="text" value="1234"/>
대표전화	<input type="text" value="052"/>	-	<input type="text" value="4321"/> - <input type="text" value="4321"/>
팩스번호	<input type="text" value="052"/>	-	<input type="text" value="1234"/> - <input type="text" value="1234"/>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tech@humane.co.kr"/>		
산업분류번호	<input type="text" value="402001"/>	주의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신고 업종코드 기입
업종	<input type="text" value="업종입니다"/>		ex)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업태	<input type="text"/>		ex)제조
종목	<input type="text" value="종목"/>		ex)자동차부품
주소	<input type="text" value="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100, 123123 (송원동2가, 송원시영아파트)"/>		검색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 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 담보조건, 상담일자,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2)